

의안번호	제573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5월 29일

#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이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3
----------	-----

발의연월일 : 2024년 5월 29일  
발의자 :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지현,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 1. 제안이유

충청북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친환경 자재인 목재 이용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과 목재문화 계승·교육, 목재제품 육성 등 목재 이용 전반에 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목재 소비를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지역목재 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의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 및 소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목재의 생산·유통·판매·이용·가공·보관
5.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행사
6.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우선구매) 도지사는 목재 및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① 도지사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목공예 경진대회·목재문화 박람회
4.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목재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목재의 다양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지역 목재 이용 등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법 제30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관·단체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의2. “원목”이란 벌채 후 제재(製材)하지 아니한 통나무를 말한다.
2.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3. “목재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목재문화”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목재제품을 선호하고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지식·규범과 생활양식을 말한다.
6. “목재문화지수”란 목재문화의 정착 및 진흥에 관한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7의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교육을 활성화하며, 목재제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현재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목재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8의3. “목재등급평가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 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탄소저장량”이란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말한다.

10. “지역 간벌재”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11.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제30조(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목재문화의 계승·교육과 지역 목재·목재제품의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의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목재 관련 캠페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목공예 경진대회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
  - ① 도지사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목공예 경진대회·목재문화 박람회
    4.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 5년간으로 함
- 조례안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에 의거 충청북도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목재 관련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등 대한 비용 추계

### 나. 추계 결과 : 150,000천원(도비 100%)

- 연 사업당 최대 30,000천원 소요 예상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안 제7조) 목재문화의 진흥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원 조달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지방세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